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징 계 및 소 청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·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·수사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지방공무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20621호, 2024. 12. 31. 공포, 2025. 7. 1. 시행)됨에 따라, 소속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·수사 자료를 감사보고서, 문답서,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 자료와 신문조서, 진술조서, 송치 결정서, 불송치 결정서, 공소장, 불기소 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 자료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징계의결 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위원장이 직권 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나 징계 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10. ~ 5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기록”을 각각 “자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“기록 또는”을 “자료 또는”으로, “수사 기록”을 “수사 자료”로 한다.

제2조의3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조사·수사 자료의 요청)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·수사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감사원의 조사 자료: 감사보고서, 문답서,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 자료
2.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: 신문조서, 진술조서, 송치 결정서, 불송치 결정서, 공소장, 불기소 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 자료

제9조의2(징계의결등의 경정) ①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

[]징계의결서

[]징계부가금 의결서

[]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

경정결정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소속	직위(직급)	성명
주문	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등 경정 사항 기재	
이유	경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	

부 칙

년 월 일

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인 사 위 원 회

관인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징계의결등의 요구) ① (생략)	제2조(징계의결등의 요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	② -----
1.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·관련자에 대한 문답서·확인서 등 조사 기록	1. ----- 자료
2.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, 공소장, 혐의자·관련자·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	2. ----- 자료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삭제

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,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. 다만, 「감사원법」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~ 4. (생략)

5.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

6. ~ 8. (생략)

⑦ (생략)

<신설>

⑥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자료 또는 수사 자료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⑦ (현행과 같음)

제2조의3(조사·수사 자료의 요청)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·수사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신 설>

1. 감사원의 조사 자료: 감사보고서, 문답서,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 자료

2.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: 신문조서, 진술조서, 송치 결정서, 불송치 결정서, 공소장, 불기소 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 자료

제9조의2(징계의결등의 경정) ①

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.

②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경정결정서의 원본은 징계등의 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 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, 경정결정서의 정본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1. 징계의결등 요구권자

2. 징계처분등 처분권자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

분등 이후 징계의결등에 경정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는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제2항 각 호의자와 징계처분등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7